

교수신분보장을 위한 협의회

연락처 (김석중 교수 bb. 015-329-8418)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는 교육유관 단체들이 연대해서 지원하는 「교수 기간제 임용제」의 위헌성 심판청구를 위해 1996년 5월 30일 (목)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은 전국대 법학과 박동희 교수(62)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교수지위 확인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위헌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박교수의 경우, 지난 25년 동안 건국대 법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법대 학장,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나 지난 95년 10월 5일 정년 3년을 남겨두고 재임용 탈락통보를 받았는데 이에 앞서 재임용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시킨 채 현승중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교수공정임용을 위한 모임, 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 교육유관단체는 지난 1996년 3월 12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교수기간제 임용제」의 근거 규정인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연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교수기간제 임용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의 법률적 배경

1) 전 전국대 교수 박동희씨는 1996년 5월 29일 교수 기간제임용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박탈당한 교수직의 회복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박교수는 1971년 건국대학교 조교수로 초임 임용되었으며, 당시 임용기간은 정년퇴직까지였다. 그러나 유신정권에 의해 1976년부터 사립학교법에 재임용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박교수는 1996년 재임용에서 탈락될 때까지 약 25년간 건국대학교에 근무해 왔으나, 학문의 업적이나 교수능력의 부족과는 전혀 관계 없이 재단 이사장이 교체되면서 이전 재단 이사장과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평가 기준이나 심사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임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2) 재임용 제도란 한편으로는 교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신 정권에 의해 강구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의 대학교원이 법률에 의해 정년보장이 되어 있어 무능한 교수조차도 퇴직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간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교수의 능력 및 연구업적 등을 평가하여 대학교원으로서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도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간별 심사제)로서, 항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계약제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근거규정인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입법 내용상의 미비와 이에 대한 잘못된 법해석 등으로 대법원이 이를 임기제라고 판결하게 됨으로써(92누9722),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금번 5개 교육유관단체와 참여연대가 연대하여 공익소송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3) 대법원 판결에 의해 줄지에 임기제가 되어버린 재임용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심사의 절차도 필요없게 되어 버렸으며 단지 기간이 되면 사전 통지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퇴직되는 것으로서, 재임용 여부는 오로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만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기간별 심사를 통하여 연구분위기를 제고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로지 미운 교수를 제거하는 교수통제제도로만 사용되게 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업무상 어느 직업보다도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그 신분의 보장이 필요한 교수직이 일시적 근로자의 지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사립대학의 경우, 임용권이 교수협의회가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이 갖고 있으며, 재임용되지 않은 교수가 타대학으로 전직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의 여건상, 교수는 학문의 계속을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위해 재임용되고자 학교재단측에 대한 어떠한 굴욕도 간내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장에 처한 교수에게 교육 및 학문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나 대학의 자치 등은 도저히 기대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교수 개인의 입장에서는 연구업적 및 교육 등에 탁월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하자없이 얼마든지 실직자기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업의 안정성이 없게 되어, 헌법이 규정한 근로권과 국가의 고용촉진 의무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4) 대법원이 재임용제를 임기제로 판결하자 세간에서는 이것이 미국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계약제 인양 오인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엄격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계약제란 정년이 보장된 교수가 존재하며, 특정한 능력을 갖춘 자는 정년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또는 일시적 필요에 의해 기한부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사립대학 교수는 전체 교수가 정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간별로 임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약제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